

중국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현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현황
2.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추진 과정
3.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 2015년 4월 20일 국무원 판공청은 4대 자유무역구에 일괄 적용되는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진입 특별 관리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네거티브리스트) 및 「자유무역시범구 외 상투자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试行办法)」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네거티브리스트」는 대외개방도 제고 및 외자관리시스템 개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민경제산업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 GB/T4754-2011)에 의거하여, 15개 산업 유형, 50개 조목, 122개 항목의 특별관리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외상투자 시행방법은 주로 심사범위, 내용, 절차 등 분야에서 현행 외자 M&A 안전심사제도에 대한 조정과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 실시간 모니터링, 동향 관리와 정기감사의 연 동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음.
- ▣ 이번 발표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에서 일관성이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1월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외국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초안에 진입 전 내국민 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이 포함된 데 이어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기준으로 4대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가 작성되면서 외국인투자제도에 일관성이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네거티브리스트」는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제내용을 반영해 18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투자 역량을 제고함.
- ▣ 향후 외국인투자 관리시스템 개혁 경험을 통합하는 한편, 자유무역구에서 실시 중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결합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의 전면적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투자이익을 제고시켜야 함.

 - 중국정부는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2015년에 우선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분야에 적용, 연내 내 국기업에 대해서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 밝힘.

1.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현황

- 2015년 4월 20일 국무원 판공청은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4대 자유무역구에 일괄 적용되는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이하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함.
- 「네거티브리스트」는 국민경제산업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 GB/T4754-2011)에 의거, 15개 산업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50개 조목, 122개 항목의 특별관리조치를 포함함.
- 2014년판 상하이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 대비 3개 산업 유형, 17개 항목이 감소하며 12.2%의 조정률을 보임.
 - 서비스업 및 제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특히 제조업 관련 조항은 46개에서 17개로 감소되었으며,¹⁾ 그중 농산품가공, 주류, 담배, 인쇄, 문화교육, 공예미술·체육, 문화용품 분야가 전면 개방되었고, 항공, 선박, 자동차, 철도, 통신설비, 광물제련, 의약제조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관련된 중점 제조업 분야가 일부 제한됨.
 - 한편 출판, 뉴스, 인터넷, 영화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과 금융업계에 대한 투자지분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문화·체육·유흥업 및 금융업 관련 규정이 보다 강화되고 상세해짐.
 - 또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개발 및 중국 대륙붕에서 시행 중인 시추작업 등에 대해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치도록 하였고 석유, 천연가스(오일세일, 오일샌드, 세일가스, 석탄층가스 등 비일반 천연오일가스 포함)의 탐사·개발은 합자, 합작의 형태로 제한되었음.

표 1. 2013~15년 네거티브리스트 비교

	2013년		2014년		2015년	
발표일	2013. 9. 29		2014. 7. 1		2015. 4. 20	
적용범위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산업분류	18개		18개		15개	
관련조항	190개		139개		122개	
	금지: 38	제한: 152	금지: 29	제한: 110	금지: 37	제한: 85
조정률	-		26.8%		12.2%	

자료: 각 연도별 네거티브리스트 참조(검색일: 2015. 6. 5).

1)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2차 산업인 제조업, 수리(水利)공사, 공예, 공업, 건축업에 대한 제한·금지 조치가 10개 조항 내외인 반면, 중국은 2차 산업에 대한 제한·금지 조치가 2014년 66개에 달하였고, 2015년 리스트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관련 조항만 17개에 달함.

표 2. 2015년 네거티브리스트 특별관리조치 중 제한 취소 항목

분야	내용
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주류·음료·정제차 제조업,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업, 의약 제조업(中藥 제외), 일반·특수 설비제조업, 전기기계·기자재 제조업
건축업	도시전철·경전철 등 철로교통설비 및 경영
도·소매업	식량·목화 도매, 음향·영상제품 및 농약 등의 소매, 도서·신문·정기간행물 체인경영, 주유소 건설 및 경영, 직판 및 인터넷판매
정보기술서비스업	전자상거래
금융업	보험중개기구(보험중개·보험대리·손해사정공사 포함), 증권투자자문기구
부동산업	고급호텔·고급오피스텔·국제회의전시센터 투자, 부동산 중고시장 거래
사업서비스업	인재(人才) 중개기관, 해외관광 전문여행사

자료: 中国自由贸易试验区: 新版负面清单继续放宽外资准入(검색일: 2015. 6. 7).

■ 「네거티브리스트」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가 자유무역구 내 투자 시에도 적용됨.

- 중국과 관련 국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유무역구 내 투자자에게 우대 개방조치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협의 또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중국 내륙과 홍콩·마카오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포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²⁾은 개방 확대와 개혁 추진을 위한 주요 조치로, 이번 출범된 「네거티브리스트」는 대외개방도 제고 및 외자관리시스템 개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네거티브리스트」는 △ 개방수준 제고 △ 관리방식 전환 △ 진입시스템 완비 등의 특징을 보임.
-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이외 항목에 대한 원칙적인 대외개방 선포로 종전 조목별 개방조치 대비 개방도가 대폭 향상됨.
- 둘째,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분야에서는 내·외자를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투자 항목과 기업 설립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투자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현대 시장시스템 완비를 가속화함.
- 셋째, 동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정책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외국인투자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일괄 열거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 경영진 및 실적조건 등을 포함한 진입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2) 현재 세계적으로 약 77개 국가가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도입함.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PI) 등을 통해 서비스무역 및 투자영역이 집중 개방될 것으로 예측됨과 동시에, 차세대 국제투자무역규칙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은 국제투자규칙의 새로운 발전방향이 될 전망이다.

- 한편 개방 확대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 각종 리스크 대비, 외국인투자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네거티브리스트」와 상응하는 국가안전심사조치인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试行办法)」(이하 「시행방법」)을 발표함.
 - 「시행방법」은 주로 심사범위, 내용, 절차 등 분야에서 현행 외자 M&A 안전심사제도에 대한 조정과 개선을 실시하였고, 정보 공유, 실시간 모니터링, 동향 관리와 정기감사의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음.
 - 「시행방법」의 실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방시스템 완비 및 국가안전 수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이번에 발표된 「네거티브리스트」 및 「시행방법」은 인쇄·배포일(2015. 4. 8)로부터 30일 경과한 지난 5월 8일 정식 실시되었음.
 - 상하이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선위량(沈玉良) 주임은 2015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이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제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용이 모호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려우므로,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2.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추진 과정

- 2013년 이전,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 후 내국민대우+포지티브리스트³⁾ 관리방식을 채택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심사기준을 실시하는 한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내 및 관리를 실시하였음.
- 18차 3중전회(2013. 11) 이후 중국은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진입 완화, 서비스영역에 대한 투자자유화 추진을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 관리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 모색함.
 - 18차 3중전회에서 시장진입제도 통일,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법적체계 건립,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 탐색 실시 등을 결의한 바 있음.
 - 외자기업에 대한 개방확대 배경에는 △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 시행 △ 경

3)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제한하지만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만을 열거한 상품품목표로, 동 관리방식은 수입제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며,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제구조 변화 △ 국가·지역 간 투자협상 증가 3가지 요소가 존재함.

- 18차 3중전화에서 외상투자에 대한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시행할 것을 제기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입의 효율성 제고는 향후 관리방식 혁신의 기본방향임.
- 중국경제 구조조정으로 특히 서비스, 제조업에 대한 개방수요가 가중되고 있으나, 이전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수정을 통한 개방 확대가 필요하며, 자본의 해외투자(走出去)와 외자도입(引进来)이 병행되는 이른바 쌍방향 개방(双向开放) 정책을 실시해야 함.
- 미국, 유럽 등 국가·지역과의 투자협정, 다국적 공동 자유무역구 협상 및 국내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한 개방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임.

- 2015년 1월 발표된 「외국투자법」 초안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가 포함된 데 이어 발개위가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기준으로 4대 자유무역구에 일괄 적용되는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에서 일관성이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상무부는 2015년 1월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이하 「외자3법」)을 하나로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외국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이하 「외국투자법」)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함.

- 중국정부는 「외국투자법」의 목적을 체제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촉진, 외자관리 규범화로 정의하였음.
-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 차관보급) 왕셔우원(王受文)은 「외국투자법」의 핵심은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이며, 이는 네거티브리스트 포함 분야에 대한 기존의 행정심사비준을 점차 간소화⁴⁾하는 한편, 네거티브리스트 이외 분야를 적극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함.
- 외자관리의 기본체제는 심사비준 절차를 최대 간소화하는 동시에 ‘유한허가(有限许可)+전면보고(全面报告)’의 외국인투자 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임.
- 「외국투자법」이 시행되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완화되고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방식 도입으로 외국인투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내용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왕셔우원은 「외자3법」이 외환관리, 해관 등 여러 부문과 관련되어 있어, 각 분야의 건의사항을 완비하여 신규법의 안정적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약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힘.

4) 외국인투자 관할부서는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진입허가제를 시행하고 계약서, 정관 대신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 행위에 대해 심사를 진행, 즉 대부분 외자 진입에 대한 기존의 심사비준을 실시하지 않음.

- 2015년 3월 13일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의 기준으로 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2015년 수정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이하 「지도목록」)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목록은 4월 10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음.⁵⁾
- 발개위 관련인사는 「지도목록」에 대한 수정은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관리방식 전환, 경제구조 조정, 투명도 제고를 원칙으로 실시되었다고 밝힘.
- 「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 업종을 장려·제한·금지 업종으로 분류하며, 이번 수정안은 2011년판 「지도목록」 대비 장려업종 354 → 349개, 제한업종 79 → 38개, 금지업종 38 → 36개로 감소됨.

표 3. 2011년,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비교

항목	2011년			2015년			증감		
	장려	제한	금지	장려	제한	금지	장려	제한	금지
농림·목축·어업	11	3	3	10	1	3	-1	-2	0
채광업	9	8	3	5	4	3	-4	-4	0
제조업	278	32	12	271	8	7	-7	-24	-5
전력·열에너지·연료가스·물 생산·공급	9	3	1	14	2	1	+5	-1	0
교통운수·창고·우정(邮政)	14	7	2	14	4	2	0	-3	0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	-	-	-	-	1	-	0	+1	0
도·소매업	3	6	-	3	3	1	0	-3	+1
금융업	-	5	-	-	4	-	0	-1	0
부동산업	-	3	-	-	-	-	0	-3	0
임대·상업서비스	6	3	1	6	2	2	0	-1	+1
과학연구·기술서비스	15	3	2	17	1	2	+2	-2	0
수력·환경·공공시설관리	4	-	2	4	-	2	0	0	0
교육	2	1	1	1	3	1	-1	+2	0
위생·사회복지	1	-	-	2	1	-	+1	+1	0
문화·체육·유흥업	2	5	10	2	4	9	0	-1	-1
기타	-	-	1	-	-	3	0	0	+2
합계	354	79	38	349	38	36	-5	-41	-2

주: 대분류체계는 2015년판 「지도목록」을 기준으로 함. 2011년판과 비교할 때 열에너지 항목이 포함되었고, 과학연구·기술서비스·지질탐사에서 지질탐사 항목이 제거됨

자료: 연도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5. 6. 7).

- 「지도목록」 중 중국 측 지분통제 조건의 장려, 제한업종에 대한 심사비준을 제외한 기타 내·외자 투자는 등록제를 실시, 각 지방정부가 등록수속을 처리함.

5) 1995년 제정 이후 2011년 4월까지 5차례 수정되었고, 2014년 11월 제6차 수정안을 공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 2015년 4월 10일 정식 발효됨.

- 「지도목록」은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 진입에 대한 제한 및 금지를 규정해야 하며, 국무원 또는 산업정책상 외국인투자진입 관련조항을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서술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견인과 동시에 중국 자금도입구조 최적화 및 질적 향상을 추구하였음.
 - 한편 2015년 1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표한 『세계 투자추세 보고(全球投資趨勢報告)』에 따르면, 최근 중국 외국인투자 유입 분야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추세⁶⁾이며, 외국인투자의 성질 및 액수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상무부는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경쟁력 강화로 2014년 서비스업 분야 신설 외상투자기업은 1,58만 개, 실제 외국인투자액은 662.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14.8%, 7.8% 증가하였다고 밝힘.
 - 외국인투자 유입의 업종 전환은 중국 산업구조의 전형승급(转型升级)에 따른 결과이며, 서비스업 개방 확대 및 제조업 구조전환에 대한 수요는 수정된 「지도목록」에 반영되었음.
-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는 2015년 수정판 「지도목록」의 규제내용을 반영해 18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투자 역량을 제고함.⁷⁾
- 이번에 발표된 「지도목록」의 제조업,⁸⁾ 서비스업⁹⁾ 관련 규제가 모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한 「네거티브리스트」 또한 동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두드러짐.

3.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향후 전망

- 상무부가 추진 중인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 특별관리조치 축소 △ 관리감독 강화 △ 규범성·투명성 제고 △ 중점 산업보호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첫째, 각 산업분야 세무 항목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특별관리조치를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네거티브리스트-포지티브리스트 간 차이를 분명히 하는 등 시장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 6) 2014년 전체 외국인투자 중 서비스분야가 56%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분야는 36%까지 하락함.
 - 7)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또한 2011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한 바 있음.
 - 8) 화학원료, 화학제품, 의약, 화학섬유, 통용설비(通用设备, 국민경제 각 분야에서 제조 및 수리에 필요한 물질기술장비의 각종 생산설비), 전문설비 제조업은 제한업종에서 삭제됨.
 - 9) 전자상거래, 체인 경영, 지선철도, 지하철, 경전철, 해상운수, 공연장 등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조건을 취소 또는 완화하였고, 직판, 통신판매, 수출입상품검사인증, 철도화물운송, 보험중개회사, 재무회사, 신탁회사, 화폐중개회사 등을 제한업종에서 삭제하는 한편, 건축설계, 양로기구 분야를 장려업종에 포함함.

- 둘째, 최근 일부 다국적 기업이 이중가격책정, 경쟁적 배척, 불합리한 고액 특허비용 수납 등의 방식으로 독점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을 넘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되어 효과적인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 사중사후 관리감독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함.
- 셋째, 현행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이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관리 다각화, 지역 불균형, 통일성 및 규범성 결핍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항목에 대한 분류 강화와 함께, 중첩·교차 충돌되는 항목을 제거하여 규범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된 특별관리 조치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국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투자방식 및 기술 혁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네거티브리스트」 산업 유형이 제한적이므로 어떻게 자국 산업 및 일부 전략적 신흥산업 보호를 위한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정할 것인가, 어떻게 경제자유와 경제안전 간 균형을 도모할 것인가는 향후 연구해야 할 주요 과제임.

■ 향후 외국인투자 관리시스템 개혁 경험을 통합하는 한편, 자유무역구에서 실시 중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결합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함.

- 2015년 4월 17일 열린 국무원 정책설명회에서 발개위 부주임 련웨이량(连维良)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금년 우선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분야에 적용하고, 연내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 밝힘.
-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개혁 심화, 개방 확대, 관리절차 간소화 및 최적화, 정보화 수준 제고 등을 통해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구축이 필요함.

■ 2015년 6월 1일 중국 상무부는 한중 FTA 발효 2년 내 양국은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에 기반을 둔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부문에 대한 2단계 협상을 통해 더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갈 전망이라 밝힘.

- 한중 FTA는 2005년 양국의 민간공동연구로 시작, 2012년 5월 정식 협상개시 선언 이후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년 2월 25일 가서명, 6월 1일 정식 서명을 통해 정식 발효까지 국회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음.
- 한국정부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관세감축 및 철폐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실질GDP 0.96% 추가 성장, 146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개선, 5만 3천여 개 일자리 창출, 세수 0.27조 원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또한 국무원 추산에 따라 향후 10년간 실질GDP가 0.34% 확대될 것으로 보임.

- FTA 발효 이후 최장 20년의 과도기를 거쳐 한국, 중국의 무관세 제품은 각각 조세항목의 92%, 91%, 수입액의 91%, 8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대중국 투자 시 외국인투자 관련 개정에 따른 변화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현재 22개 국가 지역과 14개 자유무역협정¹⁰⁾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6월 중국-한국 FTA, 중국-호주 FTA¹¹⁾ 공식서명에 따라 협상 중인 기타 자유무역협정 또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6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중미 양자투자협정(BIT)이 주요 사안으로 제기되며 6월 12일 투자제한항목 관련 네거티브리스트 교환에 이은 BIT협정체결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음.

- 상하이시 인민정부 발전연구센터 주임 샤오린(肖林)에 따르면, 「네거티브리스트」는 중미 BI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같은 국가간 협상추진의 전제조건으로 한 국가 내에서 일관된 적용이 필요함.
- 2013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중미 BIT협상의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지역별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교관련 법률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이번 출범된 「네거티브리스트」가 4대 자유무역구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기존 리스트 대비 상대적으로 중미 BIT협상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됨.
- 중미 BIT의 주요 목적은 양국간 투자분야에 존재하는 각종 장애, 장벽, 제한을 가능한 제거하는 것으로, 「非명시 항목에 대한 투자 허용」 원칙에 따라 일단 BIT가 발효되면 「네거티브리스트」는 상대국의 「문제성 투자」를 제한하는 유일한 보호막이 될 전망이다.
- 2015년 4월 20일 중국 재정부 부장 로지웨이(楼继伟)는 미국 측이 제시한 「네거티브리스트」가 핵심 인프라, 주요기술, 국가안전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구체적 정의를 내리지 않아 중국투자자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¹²⁾
- 「네거티브리스트」는 국가안전 수호와 핵심기술 및 전략자원·산업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BIT 정식 발효 이전 「네거티브리스트」 완비가 시급함.¹³⁾
- BIT 발효 시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하고, 세계 1, 2위 경제대국간 포괄적 협력이 가능해져 글로벌

10) 동남아시아연합국가, 싱가포르, 파키스탄,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한국, 이탈리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및 중국본토-홍콩-마카오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포함함.

11) 호주는 FTA 발효와 동시에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부문을 개방, 중국은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며, 투자분야에서 양국은 상호 최혜국우대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

12) 반면 미국은 중국 측이 제시한 네거티브리스트가 너무 길고, 내용이 광범위하여 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제기함.

13) 제7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2015년 9월 초 더욱 보완된 네거티브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음.

- 별 투자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중미 BIT와 중국 외국인투자 관리방식 개혁은 외자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경제무역협정 체결에 필요한 새로운 참고표본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4. 美 BIT 표준문안-中 2015년 「네거티브리스트」 비교

분류	내용	美 BIT 표준문안	中 2015년 「네거티브리스트」
투자	투자정의	(광의적) 8개 주요형식 (직·간접 투자, 금융투자 등)	(협의적) 외국인투자
	투자과정	진입 전+진입 후 내국민대우	진입 전 내국민대우
기능	행위주체	협정체결국 정부	주최국 주동적 개방
	표현형식	국제조약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첨부문헌)	정부문건 (국무원 판공청)
	기능	양자간 투자보호	외국인투자 관리
	법적근거	협정체결국 법률법규: 국제관습법	국내 법률법규
내용	구체적 내용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자보장	내국민대우, 투자 제한·금지
범위	산업분류	모든 국민경제산업 분야 포괄	15개 산업분야 한정
	적용범위	협정체결국 영토: 주권, 관할권 행사가능 구역	4대 자유무역구: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자료: 负面清单的秘密 및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5. 7. 1).

〈참고자료〉

『21세기경제报道』. 2014. 「负面清单的秘密」. (9월29일)
 『国际上报』. 2015. 「吸引外资：结构质量双升级」. (3월17일)
 『国际上报』. 2015. 「外商准入管理改革渐行渐进」. (5월8일)
 『每日经济新闻』. 2015. 「叶檀：自贸区负面清单为国际谈判留好牌」. (4월22일)
 『每日经济新闻』. 2015. 「张茉楠：中美投资协定谈判核心是负面清单」. (6월16일)
 『人民网』. 2015. 「四大自贸区共用负面清单“瘦身”」. (4월23일)
 『上海证券报』. 2015. 「BIT谈判正将中美关系提升至新的战略高度」. (6월25일)
 『商务与税务快讯第21期』. 2015. 「中国自由贸易试验区：新版负面清单继续放宽外资准入」. (5월7일)
 『深圳商报』. 2015. 「自贸区负面清单“瘦身”特别管理措施缩减至122项」. (4월21일)
 『信息时报』. 2015. 「国务院对外商投资实行负面清单管理」. (4월21일)
 『中国经济导报』. 2015. 「新外商投资目录：负面清单管理的一次重要推进」. (3월19일)
 『中国经营报』. 2015. 「外资管理负面清单改革的四大重点」. (5월23일)

- 『中国新闻网』. 2015. 「发改委：推进外商投资向负面清单管理模式转变」.(6月11日)
『中央政府门户网站』. 2015. 「汪洋：根据自贸区情况及时调整外商投资负面清单」.(4月22日)
『中国政府网』. 2015. 「中国四地自贸区外资准入共用负面清单再减17条」.(5月19日)

자료 정리: 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조지현(jihyun2828@hanmail.net)